

한국과 주요국 FTA 협정의 농업분야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

정혜련* 임정빈**

Keywords

FT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엄격성지수(Restrictiveness Index, Tariff), 관세양허지수(Concession Index)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agricultural rules of origin in Korea's seven FTAs and other eight FTAs of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Europe, seeking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FTA negotiations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i) the agricultural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of Korea's FTAs are more restrictive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FTAs; (ii) the restrictiveness index of basic agricultural products is higher than that of the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iii)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trictiveness index and trade values, the higher the restrictiveness index is, the larger the values of import and export are, with some exceptions; (iv) an analysis of the relative degree of liberalization based on both tariff concession and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shows that the Korea-Singapore FTA, Japan-Mexico FTA, EU-Chile FTA are relatively less liberalized, while the China-Chile FTA, China-New Zealand FTA, Korea-ASEAN FTA, US-Australia FTA are relatively more liberalized.

차례

1. 서 론
2. 농업분야 FTA 원산지 규정의 체계
3. 농업분야 FTA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및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겸임연구원. e-mail: jeongbin@snu.ac.kr

1. 서 론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진전이 지연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통상 환경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역주의(regionalism)에 대한 의존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10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381개의 RTA(Regional Trade Agreement)가 체결된 것으로 통보되었으며,¹ 한국은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를 시초로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 9개 FTA를 체결하였다.² 일부 민감 농산물의 예외가 있긴 하나, 이러한 FTA 협정들은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통상보호 수단인 관세장벽의 일정 기간 내 철폐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각 FTA 협정들의 관세 철폐 이행기간이 완료되는 때에는 산업보호 수단으로서의 관세는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반덤핑(anti-dumping), 셰이프가드(safeguard), 상계조치(countervailing measures) 등과 같은 비관세적 통상정책 수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은 FTA와 같이 협정 당사국 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 관세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당해 상품이 이러한 특혜의 수혜자격을 가진 국가의 상품인지를 식별하는 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FTA와는 필수불가결의 관계에 놓여있으며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등 지역주의의 역사가 깊은 미국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자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통상수단이자 미래 협상 쟁점은 원산지 규정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왔고, 남미 국가들의 경우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체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세철폐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원산지 규정의 폐해를 경험한 바 있으며, EU(European Union)의 경우 경제통합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원산지 규정의 통일 작업을 통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뿌리내렸다. FTA 후발 주자인 한국의 경우는 이들 국가와는 달리 최근 한·미 FTA, 한·EU FTA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쇠고기, 자동차, 섬유 등의 원산지 규정의 이슈화를 통해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FTA 체결국이 다양해지고 동일 품목이라도 각 FTA별 원산지 규정이 달라짐에 따라 수출입 통관업무에 관여하는 세관당국과 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¹ WTO 회원국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2013년 10월, WTO 통보 기준):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Information System (RTA-IS), <<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² FTA 체결 건수는 9개이지만 총 46개국과의 FTA이다

현재 미국, EU 등 주요국과 FTA를 타결하고 중국, 일본 등과의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동안 학계의 논의가 많지 않았던 농업분야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의 FTA 농업분야 원산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지나치게 경직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FTA 협상 및 이행 경험과 함께 국제곡물가격 상승,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 한식 세계화,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100억 불 수출 목표, 중국 경제의 급부상 등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값싼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한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한국의 FTA 협상 상대국들은 최근 들어 한국과의 원산지 규정 협상에서 보다 경직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현재의 FTA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그 미래는 여러 FTA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³와 무역전환 효과의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수출의 측면에서는 각 국가와 체결한 FTA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상품을 수출하더라도 어느 국가로 수출하느냐에 따라 원재료 조달이나 생산방식을 다르게 해야 하는 부담과 애로가 생기게 되며, 수입의 측면에서는 관세가 철폐된 후, 보다 완화된 원산지 규정은 수입단가를 낮추게 되므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의 FTA 상대국에서 보다 완화된 FTA 상대국으로 수입선을 전환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은 세관 당국의 인력 증강과 비용 증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FTA 원산지 규정은 기술적인 전문성으로 인해 일부 품목분류 전문가 또는 관세행정 전문가들의 고유영역에 속한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의 이론적·실증적 연구의 역사는 길지 않다. 이론적 연구는 Krishna and Krueger(1995), Falvey and Reed(1998), Krueger(1999) 등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들 연구는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역내 중간재 산업보호 효과, 더 나아가 역내 국가 간 교역 확대와 역내외 국가로부터의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으나, 원산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될 경우 무역전환 효과로 인해 오히려 생산, 교역 및 투자에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부정적인 효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³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면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의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과 활용절차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이는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기 때문에 FT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스파게티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또는 누들 볼 효과(Noodle Bowl Effect)라고 부른다.

고 결론내리고 있다.⁴

한편, 실증적 연구는 Estevadeordal(2000)이 엄격성 지수(Restrictiveness Index)의 개념을 도입한 이후, 이에 근거하여 원산지 규정의 시장접근 및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Estevadeordal(2000)은 NAFTA에서 원산지 규정이 관세철폐만큼이나 중요한 무역정책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이 엄격하면 할수록 관세철폐 이행기간이 길어진다는 것과 미국과 멕시코 간 관세율 차이가 클수록, 즉 무역갈등 발생 가능성이 커질수록 엄격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됨을 밝혔다. 그밖에 NAFTA를 대상으로 원산지 규정과 관세양허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투자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Cadot et al(2002)은 NAFTA의 원산지 규정이 FTA 체결에 따른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과 관세특혜수준의 결합 효과가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추정결과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이 감소하는 반면 관세특혜수준이 클수록 멕시코의 대미 수출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son et al(2005)은 멕시코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NAFTA 원산지 관련 비용을 추정하였고, Estevadeoral et al(2006)은 원산지 규정과 해외직접투자(FDI)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⁵ 한편, 한국에서도 최근 FTA 추진과 함께 방호경(2004), 정인교 등(2005), 송송이(2005), 김한성 등(2009)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FTA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을 비교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공산품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농업분야 원산지 규정의 특징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협상전략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한국이 체결한 FTA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타 국가들이 체결한 FTA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이 체결한 FTA의 위상을 가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또한, 엄격성지수의 분석을 뛰어넘어 관세협상 결과와의 관계 및 수출입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실증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FTA의 심층적인 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우리가 체결한 7개 주요 FTA의 농업분야 원산지 규정을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의 8개 FTA 원산지 규정과 함께 정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관세협상 결과 및 수출입 교역액 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정책적·협상 전략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⁶

4 김한성 등(2009) 재인용. pp. 52

5 김한성 등(2009) 참조. pp. 64-69

2. 농업분야 FTA 원산지 규정의 체계

2.1. 개념과 본질

원산지 규정의 일반적인 목적 및 기능은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방지⁷하고 당사국 간의 교역을 확대하면서,⁸ 규정의 강화를 통해 제3국의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데 있다.⁹ 그러나 각국의 산업경쟁력이나 자원보유 현황이 상호보완적인 경우보다는 상호 대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3가지 목표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6 연구 대상 FTA 현황(약어 및 발효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주요국의 FTA는 당사국 간 농업분야 이해가 상충되어 그 결과가 한국의 상황에 유의미한 협정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대상품목은 2007년 개정된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상의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이 중 제3류, 제12류, 제16류의 수산물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품목은 6단위(소호, Subheading) 기준 총 5,052개 중 589개, HS 8~10단위 기준 1,500여 개에 달한다.

<연구 대상 FTA 현황>

구분	FTA 협정	약어	발효
한국	한국·칠레 FTA	KCFTA	2004.4.1
	한국·싱가폴 FTA	KSFTA	2006.3.2
	한국·EFTA FTA	KEFTA	2006.9.1
	한국·ASEAN FTA	KAFTA	2007.6.1
	한국·미국 FTA	KUFTA	미발효(2007.4.2 타결)
	한국·인도 FTA	KIFTA	2010.1.1
	한국·EU FTA	KEUFTA	미발효(2009.7.13 타결)
미국	미국·호주 FTA	UAFTA	2005.1.1
	미국·칠레 FTA	UCFTA	2004.1.1
일본	일본·멕시코 FTA	JMFTA	2005.4.1
	일본·태국 FTA	JTFTA	2007.11.1
중국	중국·뉴질랜드 FTA	CNFTA	2008.10.1
	중국·칠레 FTA	CCFTA	2006.10.1
유럽	EU·칠레 FTA	ECFTA	2003.2.1
	캐나다·EFTA FTA	CEFTA	2009.1.1

7 원산지 규정을 느슨하게 체결하는 경우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제3국에게로 전해져 수출국의 이익은 감소하고 수입국의 피해는 증가하여 FTA 체결의 효과가 전체적으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8 누적(cumulation) 등을 통해 타방 당사국산 재료의 원산지를 자국산으로 인정함으로써 제3국산보다는 타방 당사국산 원자재를 이용하도록 유도

9 당사국이 아닌 역외국가는 강화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인위적 경쟁력 저하를 역내 직접투자를 통해 상쇄

경우는 드물다. 특히, FTA 원산지 규정은 협정의 당사국인 특정 품목의 수출국과 수입국, 그리고 제3국과의 이해가 역학적·대립적으로 상품 및 자본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⁰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FTA 원산지 규정의 결과물은 양국의 이해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귀결되어 진다.

전통적인 무역정책수단인 관세와 비교해 볼 때, 원산지 규정이 갖는 특징과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 규정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즉, FTA 협상을 통해 관세를 철폐시킨 경우에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특혜관세의 혜택을 얻을 수 없으므로, 결국 관세협상의 결과를 퇴색시킬 수 있다. 둘째, 관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폐되는 반면, 원산지 규정은 관세가 철폐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영구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쇠고기의 관세 40%는 이행 15년차부터는 관세가 0%가 되지만, 관세가 철폐된 이후에도 이 0%의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원산지 기준은 계속해서 존재한다. 셋째, 원산지 규정은 당사국의 생산형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FTA 협상단계에서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 산업의 생산패턴을 반영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체결된 FTA의 원산지 규정은 기존의 생산패턴을 바꾸기도 한다. 수입산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완화된 원산지 규정을, 국내 원료 조달이 가능한 경우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희망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정책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이 있을 경우에도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통해 원료의 해외 조달을 최대한 막고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협상 당사국의 국내적 산업여건 이외에 제3국인 주변국의 경제상황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한국의 경우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한 중국이 인접해 있고 중국 현지 투자가 상당 수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원산지기준 결정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농업분야의 경우에도 중국의 쌀 농산물은 식품산업진흥정책 수립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기준을 협상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¹⁰ 예를 들어, 검역 등의 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A국과 K국의 FTA에서 소의 도축(slaughtering) 공정을 원산지 기준으로 인정하는 경우, A국의 인접국인 M국산 쌀 소를 A국이 수입하여 자국에서 도축한 한 경우에도 A국산 쇠고기로 인정받아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고 K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FTA의 혜택이 M국에게로 일부 이전되는 것이 되며 K국의 경우 FTA를 통해 값싼 M국산 쇠고기까지 수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피해가 더 증가하게 된다. 한·미 FTA에서 한국이 도축을 원산지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이유는 미국 주변국인 멕시코, 캐나다 등의 쌀 소나 돼지를 수입하여 도축만 해서 한국으로 수출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었으며, 한·미 FTA의 섬유분야와 한·EU FTA의 자동차 원산지 기준이 협상 최후까지 미결 쟁점으로 남게된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원산지 규정의 체계

가. 일반적 원산지 규정(Regime-wide Rules of Origin)¹¹

실제 통관 업무에서 HS 6단위 기준 품목별원산지기준이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규율하지 못하거나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협정문을 통해 일반적 원산지 규정(Regime-wide Rules of Origin)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원산지 기준에는 누적기준, 미소기준, 불인정 공정, 중간재 지정, 부속품, 포장재, 간접재료, 역외가공, 개성공단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대체로 미소기준, 누적규정, 역외가공, 부속품 및 포장용품에 관한 규정은 원산지 규정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당사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준인 반면, 최소 가공기준 및 직접운송 원칙은 제3국의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FTA의 일반적 원산지 규정은 <표 1>와 같으며, 이 중 농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의미가 큰 누적규정, 미소기준, 흡수 및 중간재 지정, 불인정 공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누적(cumulation)

누적이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FTA 당사국끼리는 원료의 수급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FTA 특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누적에는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이란 수출입 당사국 간에만 누적을 인정하는 것이고,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은 해당 FTA 전체 지역이 하나의 단일 영토로 간주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 간 누적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 마지막으로,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¹¹ 정인교 등(2005) 참조

¹² 양자누적과 완전누적은 다수국 간 FTA에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A, B, C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FTA에서 양자누적만 인정되는 경우 누적은 A-B, A-C 간에만 인정이 된다. 즉, A국이 B국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A국에 수출하는 경우 특혜관세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완전누적이 인정되는 경우 A국은 B국으로부터 원료를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C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다자 FTA에서 완전누적이 적용되는 경우 역내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역내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인정이 용이해져 특혜관세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역외국은 원료공급 및 가공품 수출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이란 해당 FTA의 역내 회원국이 아닌 특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¹³

(2) 미소기준(de-minimis)

미소기준은, 용인기준(tolerance level)이라고도 하는데,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세번째 경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품 가격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소기준은 FTA 체결에 따른 특혜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줌으로써 그만큼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미소기준이 섬유 및 농업분야에 대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즉, 섬유의 경우, 중량 기준 10% 이하에 해당하는 단추, 지프 등은 제3국의 재료를 사용해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자국산 채소 90%에 가격 기준 10% 이하의 수입산 채소를 포함해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며, 자국산 주스에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썬 주스를 포함시키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농수산물(제1류~제24류)의 미소기준은 협정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칠레 FTA 및 한·EFTA FTA에서는 비원산지 재료가 포함될 경우 미소기준 적용을 위해 HS 6단위 세번 변경 요건을 동시에 명시하고 있다. 즉, 수입산을 포함하더라도 국내에서 최소한의 가공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싱가포르 FTA 및 한·인도 FTA의 경우는 제1~14류의 기본 농산물에 대해서는 미소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한·미 FTA, 미·호주 FTA, 미·칠레 FTA 등에서는 미소기준 적용 제외 농산물¹⁴을 부속서에 명시하였고 이 경우 미소기준은 혼합과 같은 단순공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EU FTA, 일·태국 FTA는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품목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멕시코 FTA에서는 제1~24류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미소기준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¹³ 이러한 유사누적 규정은 누적규정이 포함된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들 간의 별도 협정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EU와 EU에 가입하지 않은 EFTA 회원국들간에 체결된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협정을 들 수 있다. 특히 1997년 이후로 EU, EFTA 국가들, 중동부 유럽국가들, 발틱국가들, 슬로베니아 및 터키 간에는 유사누적 규정을 통해 일종의 유럽형 누적제도(European cumulation system)가 확립되어, 특혜 원산지 규정을 통일시켜 가고 있다.

¹⁴ 제03류(어류), 제4류(낙농제품), 제07류(채소류), 1006호 및 11류(쌀제품), 0805호 및 2009.11~39호(감귤 및 주스류), 제8류 및 제20류(복숭아·배, 살구류), 제15류(동식물성유지), 제17류(설탕)

한국과 주요국 FTA 협정의 농업분야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
 표 1. 농업 관련 일반 원산지 규정 비교

	KC FTA	KS FTA	KE FTA	KA FTA	KI FTA	KU FTA	KEU FTA	UA FTA	UC FTA	JM FTA	JT FTA	CN FTA	CC FTA	EC FTA	CE FTA
●누적조항															
- 양자누적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최소 가공 조건)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 완전누적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인정(일부 품목)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 유사누적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미소기준															
- 일반제품	8%미만	8%미만	10%미만	10%미만	10%미만	10%미만	10%미만	10%미만	10%미만	10%미만	PSR	10%미만	8%	10%미만	10%미만
- 섬유제품(중량)	8%미만	8%미만	10%미만	10%미만	7%	7%	PSR	7%	7%	7%	PSR	10%미만	8%	PSR	PSR
- 농수산물(제1류~24류)	8%+CTSH	10%+CTSH(1~14류 제외)	10%+CTSH	10%미만	10%(1~14류 제외)	10%(일부 농수산물 적용 제외)	PSR	10%(일부 농수산물 적용 제외)	10%(일부 농수산물 적용 제외)	적용제외	PSR	10%미만	8%미만	PSR	10%미만
●부속품	본제품에 포함	본제품에 포함	본제품에 포함	본제품에 포함	본제품에 포함	본제품에 포함	본제품에 포함	본제품에 포함	본제품에 포함	본제품에 포함	본제품에 포함	본제품에 포함	본제품에 포함	본제품에 포함	본제품에 포함
●포장재	원산지 판정시 제외	원산지 판정시 제외	원산지 판정시 제외	원산지 판정시 제외	원산지 판정시 제외	원산지 판정시 제외	원산지 판정시 제외	원산지 판정시 제외	원산지 판정시 제외	원산지 판정시 제외	원산지 판정시 제외	원산지 판정시 제외	원산지 판정시 제외	원산지 판정시 제외	원산지 판정시 제외
●간접재료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중간재 지정	규정	규정	규정(유추)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불인정 공정	규정(열거규정)	규정(예시규정)	규정(열거규정)	규정(열거규정)	규정(열거규정)	규정(열거규정)	규정(열거규정)	규정(열거규정)	미규정	규정(2개) ¹⁵	규정(열거규정)	규정(열거규정)	규정(예시규정)	규정(열거규정)	규정(열거규정)
●역외가공 ¹⁶	미규정	제한적 도입(10단위 기준 130개)	제한적 도입(6단위기준 153개)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개성공단 특별	미규정	도입	도입(역외가공조건)	도입	미규정	도입	도입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주) “PSR” : 부속서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TSH: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의미한다.

15 단순 결합, 포장, 희석

16 역내생산(1단계)→역외가공(2단계)→재수입 후 역내 최종생산(3단계)와 같은 생산단계에서 이전의 역내부가가치(1단계)를 역외가공 이후의 역내부가가치(3단계)와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흡수원칙(Roll-up)과 중간재 지정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로 기업들은 수입원료를 중간재 및 최종재 생산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수입원료의 가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중간재를 생산했고, 다시 이 중간재를 최종재 생산에 투입하였다고 하자. 여기서 흡수원칙은 중간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되면, 중간재 전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¹⁷ 흡수원칙은 재료가 후속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 원산지를 유지하도록 특정 공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를 획득하는 것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비원산지 중간재의 투입은 다소간 융통성 있게 원산지 지위가 부여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에서는 흡수원칙 및 중간재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ASEAN FTA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칠레 FTA에서도 역내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중간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4) 불인정 공정(Non-qualifying Operation)¹⁸

불인정 공정이란 단순·경미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때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중국산 쌀(HS 1006호)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분쇄공정을 거쳐 가공한 쌀가루(HS 1102호)는 2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한다. 즉 단순한 건조작업 또는 분쇄공정만 거처도 4단위 또는 2단위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건조·분쇄 및 포장작업과 같이 비교적 단순·경미한 가공작업만 거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할 경우 우회수입 또는 관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FTA에서는 이와 같이 경미한 가공작업만을 거쳐 세번변경이 발생되거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불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불인정 공정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열거방식으로 규정할 것인가 예시방식으로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열거 방식의 경우 어떤 공정을 불인정 공정으로 볼 것인가 등이다.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등에서는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

17 만약 수입부품을 가공하여 생산된 중간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중간부품 생산에 투입된 역내부품과 부가가치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Roll-down 방식이라고 한다.

18 최소공정(minimal operations)이라고도 한다.

FTA, 미·호주 FTA는 불인정 공정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미·칠레 FTA에서는 2개(단순 결합 및 포장, 희석)의 불인정 공정만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원산지 기준은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을 완화하거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누적조항, 미소기준, 흡수원칙 및 중간재 지정 등은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불인정 공정은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우회를 방지하는 측면이 강하다.

나. 품목별원산지기준

품목별원산지기준은 어느 제품이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test)과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실질적변경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으로 대분류된다.

산동물, 육류, 과채류 등 농산물의 완전생산기준의 의미에 대해서는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으며, FTA 협정별 내용은 <표 2>와 같다. 산동물의 경우 자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야 한다(born and raised)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육류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즉, 자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산동물에서 얻어진 육류에 대해서만 완전생산기준 충족을 인정하겠다는 기준과 태어나지 않아도 일정 기간 길러지기만 하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다는 기준, 자국에서 획득되기만 하면 완전생산기준을 인정한다는 기준 등이 있으며, 양국의 입장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규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과채류의 경우에도 수확을 기준으로 완전생산을 판단할 것인지, 수확 이전에 재배도 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다.

한편,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method),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ing test) 등 3가지 기준이 이용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이란 HS 코드상 생산품과 사용 원재료에 적용되는 관세분류가 다를 경우, 즉 관세분류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른 류(Chapter, 2단위)의 재료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s of Chapter: CC), 다른 호(Heading, 4단위)의 재료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s of Heading: CTH), 다른 소호(Subheading, 6단위)의 재료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s of Subheading: CTSH)이 있다. 단위 수가 낮을수록(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

표 2. 품목별원산지기준에 대한 보충원칙

	KC FTA	KS FTA	KE FTA	KA FTA	KI FTA	KU FTA	KEU FTA	UA FTA	UC FTA	JM FTA	JT FTA	CN FTA	CC FTA	EC FTA	CE FTA
• 완전생산 정의															
- 산동물	"born and raised"	"born and raised"	"born and raised"	"born and raised"	"born and raised"	"born and raised"	"born and raised"	"born and raised"	"born and raised"	"born and raised"	"born and raised"	"born and raised"	"born and raised"	"born and raised"	"born and raised"
- 육류	없음	없음	"products from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there"	"products from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there"	"products from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there"	양국 영역에서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products from live animals raised there"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goods obtained from live animals in the Party	goods obtained from live animals raised in the Party	products from live animals raised in China and Chile	products from live animals raised there	products obtained from live animals
- 과채류	"grown and harvested"	"grown and harvested, picked or gathered"	"grown harvested or gathered"	"grown and harvested, picked or gathered"	"grown and harvested, picked or gathered"	"grown and harvested"	"grown and harvested"	"harvested"	"harvested"	"harvested"	"harvested, picked or gathered"	"harvested, picked or gathered"	"harvested"	"harvested"	"harvested"
• 부가가치기준															
- 일반기준	45%/30%	45~55%	40~70% (공제법 환산시)	40%	35%	35%/55%/35%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0%	미규정	미규정	40%	미규정	40%
- 계산법	RVC 공제법/ 직접법	RVC 공제법	MC법	RVC 공제법/ 직접법	RVC 공제법	RVC 공제법/직접법/순원가법	MC법	RVC 공제법/직접법/순원가법	RVC 공제법/ 직접법	RVC 공제법	RVC 공제법	RVC 공제법	RVC 공제법	MC법	MC법
- 기준가격	FOB ¹⁹	FOB	Ex-Works Price ²⁰	FOB	FOB	FOB/순원가 ²¹	Ex-Works Price	FOB/순원가	FOB/순원가	FOB	FOB	FOB	FOB	Ex-Works Price	Ex-Works Price

19 본선인도 가격이라고 한다. 수출품을 수출자가 선적항에서 본선까지 인도하기 전까지의 가격으로 수입국의 내국소비세가 포함되지 않는 가격이다.

20 공장도 가격이라고 한다.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 다만, 그 가격은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동 상품의 수출 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다.

21 영문으로 Net Cost라고 하며, 주로 자동차 분야에 적용된다.

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순으로) 가공 공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번변경이 일어나기만 하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재료의 사용을 제약함으로써 수입산 재료의 사용을 제약하기도 한다. 부가가치기준은 추가된 제조 또는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실질적 변형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이다. 부가가치의 비율을 계산하는 세부기준으로 수입산 부가가치 비중(Import Content: MC)²², 역내 부가가치 비율(Regional Value Content: RVC), 부품가액(Value of Parts: VP) 등이 이용되고 있다. 부가가치 기준과 기준가격은 각 FTA 협상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표 2>. 한·EFTA FTA, 한·EU FTA, EU·칠레 FTA, 캐나다·EFTA FTA 등 유럽국가들과의 FTA는 MC법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여타 FTA에서는 RVC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RVC법은 세부적인 계산방식과 사용가격에 따라 공제법, 직접법, 순원가법 등이 있다.²³ <표 1>에 따르면,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해서는 협정문에서 일반적인 부가가치 기준을 명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이러한 부가가치 계산법, 기준가격의 종류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협정문상의 이러한 보충원칙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우선 적용됨에 주의해야 한다. 특정공정기준은 충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이나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변경이 이루어 졌다고 인정하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이상의 기준 중 둘 이상을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선택기준, 둘 이상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하는 결합기준, 그 이외 협상에서 결정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15개 FTA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유형은 36개로 세부 분류가 가능하며, 각 유형의 의미는 <표 3>과 같다. 한편 36개 세부 유형을 대분류 하면, 완전생산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선택기준, 결합기준, 그리고 각 기준의 변형된 기준으로 나뉘볼 수 있다. 변형의 방식은 첫째, 품목 완화(Product Relaxation: PR), 비당사국인 ASEAN 회원국의 유사누적 인정(ASEAN Cumulation: AC), 포함 재료에 대한 추가요건(Material Restriction: MR), 특정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번변경제약(Tariff Change

²² MC법 :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 가격 대비 허용되는 수입부품 및 재료의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²³ 공제법 :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격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 생산부분으로 보는 방법, 직접법 :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 가격 대비 원산지 재료 가격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 순원가법 :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격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 생산부분으로 보는 방법

Restriction: TCR) 등이다. 그리고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기타에 포함된 기준은 해당 소호 중 경제적 이해가 큰 품목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이나 보다 강화된 기준을 별도로 부과하는 세부 품목분리(split), 사용되는 재료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중량기준(Wt), 특정공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완화시켜 주는 할당물량(SP(Q)) 방식, 일정 기간 이후 재검토(review) 등이 포함된다.

표 3. 품목별원산지기준 유형 및 의미

대분류	세부 유형	의 미
완전생산기준	WO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test)
변형된 완전생산기준	WO(PR)	모든 재료와 제품이 자국에서 완전생산되어야 하나, 일부 재료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 포함 허용
	WO(AC)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비당사국인 ASEAN 회원국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완전생산기준 충족 가능
	WO&MR	완전생산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재료의 경우 포함 비율 별도 규정
2단위 세번변경기준	CC	2단위 세번변경기준
변형된 2단위 세번변경기준	CC(AC)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 비당사국인 ASEAN 회원국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충족 가능
	CC&MR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재료의 경우 포함 비율 별도 규정
	CC&MR(AC)	완전생산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재료의 경우 포함 비율 별도 규정, 단, 비당사국인 ASEAN 회원국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충족 가능
	CC&TCR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재료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번변경 제약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
변형된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AC)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 비당사국인 ASEAN 회원국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충족 가능
	CTH&MR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재료의 경우 포함 비율 제약
	CTH&TCR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재료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번변경 제약
	CTH&TCR&MR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재료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번변경 제약, 그리고 일부 재료의 경우 포함 비율 별도 규정

표 3. 품목별원산지기준 유형 및 의미(계속)

대분류	세부유형	의 미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
변형된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TCR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재료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번변경 제약
부가가치기준	RVC	부가가치 기준
변형된 부가가치기준	RVC&MR	부가가치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재료의 경우 포함 비율 제약
특정공정기준	SP	특정공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
결합기준	CC+RVC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동시 충족
	CTH+RVC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동시 충족
	CTSH+RVC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동시 충족
선택기준	CC or Split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세부 품목 분리 중 선택
	CC or SP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 중 선택
	CC or CTSH&MR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재료의 경우 포함 비율 제약
	CC&MR or RVC&MR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재료의 경우 포함 비율 제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재료의 경우 포함 비율 별도 규정
	CTH or RVC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중 선택
	CTH&MR or RVC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재료의 경우 포함 비율 제약,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선택
	CTH&MR or RVC&MR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재료의 경우 포함 비율 제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재료의 경우 포함 비율 제약 중 선택
	WO(AC) or RVC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비당사국인 ASEAN 회원국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완전생산기준 충족 가능, 또는 부가가치 기준 중 선택
	CTH&TRC or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재료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번변경 제약,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중 선택
	CTH&TRC or RVC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재료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번변경 제약,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선택
기타	Split	세부 품목 분리
	Wt	중량기준
	CC or SP(Q)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특정공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원산지 기준 완화
	Review	일정 기간 이후 규율여부 재검토

3. 농업분야 FTA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분석²⁴

3.1. 분석 도구

본 장에서는 FTA 원산지 규정의 정량적 본질을 파악하고 그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 지수(Restrictiveness Index)와 관세양허 지수(Tariff Concession Index)라는 2가지 지수를 도입하였다.

가. 품목별원산지기준 엄격성 지수(Restrictiveness Index)

품목별원산지기준은 관세와 달리 HS 코드상의 품목분류에 기초하여 규정되거나 제품 가격에 기초하여 규정되는 등 규율방식의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계량화가 쉽지 않다. 그러나, 경제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restrictiveness)에 대한 지수화가 불가피하다.²⁵ 이러한 지수화의 선행 연구로 Estevadeordal(2000)과 호주의 Production Commission(2004)이 있다. Estevadeordal(2000)의 지수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순으로 엄격하다는 품목분류상의 원칙과 결합기준이 단일기준에 비해 엄격하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호주의 Production Commission(2005)은 Estevadeordal(2000)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 이외 협정문상에 규정된 일반원산지기준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동 연구는 속성이 다른 품목별원산지기준과 일반원산지기준을 동일 선상에서 서열화하고 있어,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여타 실증연구의 기초가 된 Estevadeordal(2000)의 접근방식²⁶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15개 FTA 농산물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지수화할 수 있도록 수정한 지수기준을 사용하였다. Estevadeordal(2000)의 엄격성 지수 개

²⁴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²⁵ 여기서 엄격성 지수는 수량의 대비에서 기준치를 100으로 했을 때의 100분비로 나타내는 지수가 아니라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상대적인 엄격성을 서열화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절대적인 엄격성 지수의 기준과 엄격성 지수가 존재할 수 없으며, 연구대상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상대적인 비교에서만 유의미할 수밖에 없다.

²⁶ Estevadeordal(2000)의 기준은 NAFTA의 품목별원산지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념 도입은 품목별원산지기준의 계량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엄격성 지수를 기초로 그간의 연구에서 각 FTA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였으며, 교역 및 투자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동안의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엄격성 지수의 가장 큰 한계는 속성이 다른 다양한 품목에 대해 동일한 지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산물에서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수산물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육류의 경우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제1류에 분류되고 여기서 나온 육류는 제2류에 분류함으로써 살아있는 동물에서 냉동 육류를 얻는 과정은 2단위 세번변경이 된다. 이에 반해 수산물의 경우, HS 품목분류상 제3류에 살아있는 수산물, 냉장·냉동·건조·염수장 수산물이 모두 분류되어 살아있는 수산물에서 냉동 수산물을 얻는 것이 4단위 세번변경이 된다. 즉, 동일한 가공방법이지만 HS 품목분류에 따르면 변경기준이 달라지고 엄격성 지수도 달라지게 된다. 이를 감안할 때, 제1류부터 제97류까지 모든 품목의 엄격성 지수에 대한 평균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동일 분야별 별도의 엄격성 지수를 작성하고 연구 대상 FTA의 엄격성을 비교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수기준을 수정·보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엄격성 지수를 7단계로 나눴고,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순으로 엄격하다는 품목분류상의 기본원칙과 결합기준이 단일기준에 비해 엄격하다는 원칙에 기초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고려를 하였다. (i) 우선, 제1류의 산동물의 경우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완전생산기준을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다른 류에서 제조될 수 없으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완전생산기준과 동일하게 보았다.²⁷ (ii) 수입된 재료의 사용을 제약하는 세번변경 제약의 경우와 포함된 재료에 추가요건이 있는 경우는 한 단계 더 강화된 지수로 분류하였다. (iii) 선택적 요건의 경우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엄격성 지수를 분류하였다. (iv) 중량기준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과 동일하게 보았다. (v) ASEAN 회원국에 대해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²⁸을 인정하는 경우,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보았으나 동일한 지수 구간에 분류되었다. (vi) 엄격성 지수 7에 해당하는 완전생산기준에 대한 완화 및 부가조건을 부여하는 WO&MR은 7구간에 분

²⁷ 제7류 및 제8류의 과일과 채소의 경우 신선만 별도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신선, 냉장, 건조 등이 같이 분류되고 있어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완전생산기준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²⁸ 유사누적이란 해당 FTA의 역내 회원국이 아닌 특정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를 일정한 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류하였다. (vii) 세부 품목 분리의 경우 분리의 목적이 된 주요 품목을 기준으로 엄격성 지수를 산정하였다. (viii)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공제법으로 계산된 부가가치 기준을 근거로 지수를 산정하였다. (ix) MC법은 RVC법으로 전환하였고 공장도가격(Ex-Works Price)과 본선인도가격(FOB)과의 차이는 무시하였다.

이상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된 FTA 농업분야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서열화하기 위한 지수의 기준과 각 지수별로 해당하는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 4>과 같다. 지수 1이 가장 완화된 기준이며, 6단위 이하에서 일어나는 변경을 의미한다. 다만, 연구대상이 된 FTA의 농산물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품목별원산지기준이 없었다. 이에 반해, 지수 7은 가장 엄격한 기준이며, 완전생산기준 또는 2단위 세번변경 기준보다 강한 품목별원산지기준이 이에 포함된다.

표 4.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 지수 및 해당 유형

지수	지수 요건	해당 유형
7	- 완전생산기준 - 완화된 완전생산기준 - 강화된 2단위 세번변경기준 - 제1류의 CC	- WO; - WO&MR; WO(PR); WO(AC) ; - CC&TCR; CC&MR; CC&MR(AC); - CC+RVC(45%/30%); CC+RVC(40%); - CC+RVC(45%); CC+RVC(50%); CC+RVC(60%); - CC(제1류의 산동물)
6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완화된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50% 초과 부가가치 기준의 결합기준	- CC; - CC(AC); Review; - CTH+RVC(55%); CTH+RVC(60%); - CTH+RVC(70%)
5	- 강화된 4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50% 이하 부가가치 기준의 결합기준 - RVC 50% 초과 단일 부가가치 기준 - 단일 중량기준 50% 초과 - 강화된 부가가치 기준 - 특정공정기준	- CTH&TCR; CTH&MR; CTH&TCR&MR; - CTH&MR or RVC(40%)&MR - CTH+RVC(40%); CTH+RVC(45%); - CTH+RVC(45%/30%); CTH+RVC(50%); - RVC(55%); RVC(70%); RVC(80%); - RVC(40%)&MR; CC&MR or RVC(40%)&MR; - 중량기준(70%); - SP; CC or SP
4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완화된 4단위세번변경기준 - RVC 50% 이하 단일 부가가치 기준 - 단일 중량기준 50% 이하 - 완화된 특정공정기준	- CTH; CTH or RVC(40%); CTH&TCR or CTH; - CTH(AC); - RVC(45%); RVC(50%); CTH&MR or RVC(45%); - CTH&TCR or RVC(40%); RVC(40%); WO(AC) or - RVC(45%); - CC or SP(Q)
3	- 강화된 6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	- CC or CTSH&MR; CTSH&TCR; - CTSH+RVC(35%)
2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TSH
1	- 6단위 이하에서의 세번변경	

주 1) '&'는 부가조건, '+'는 결합조건, 'or'는 선택조건을 의미한다.

2) 약어에 대한 해석은 <표 3> 참조.

나. 관세양허 지수(Tariff Concession Index)

FTA 품목별원산지기준과 관세협상 결과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FTA 관세협상 결과를 상대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한 지수가 필요하다. FTA의 관세협상 결과는 철폐 기간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계절관세, 세번분리, 일부 감축, 농산물 셰이프가드 등의 특별한 방식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관세감축 방식의 개방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이를 <표 5>와 같이 지수화하였다.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지수와 같이 1에서부터 7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개방수준이 낮고, 수치가 낮을수록 개방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5. 관세양허지수 및 관세협상 결과 유형

지수	양허 유형
1	즉시철폐; 2년; 3년; 4년
2	5년; 6년; 7년; 8년
3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4	15년; 16년; 18년
5	계절관세; 부분감축(관세); 세번분리; ASG; TRQ
6	계절관세(양허제외); 부분감축(증가세); 부분감축(EP 증가세); 세번분리(양허제외); 세번분리+ASG; TRQ(부분감축); TRQ(양허제외); TRQ(증가세감축); TRQ(DDA); TRQ+ASG
7	양허제외; 양허제외+재검토; 재검토; DDA 타결 이후 재검토

지수 1은 즉시철폐 또는 5년 미만의 관세철폐 기간을 가진 양허를 의미한다. 지수 2는 5년 이상 9년 미만, 지수 3은 9년 이상 15년 미만, 지수4는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계절관세, 부분감축, 세번분리, 농산물 셰이프가드, 저율관세할당 등의 특별대우 방식(special treatment)을 관세감축 방식보다 보호수준이 높은 것으로 취급하였으며, 이들 특별대우 방식에 추가하여 기준관세를 양허제외, 증가세만 감축, DDA 이후 감축, 농산물 셰이프가드 등이 추가되는 경우는 보호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양허제외는 가장 보호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절관세’는 계절별로 관세철폐율을 달리하여 중국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을 의미, ‘계절관세(양허제외)’는 계절별로 분리하되 비성수기 관세는 철폐하되, 성수기의 관세는 감축하지 않는 것, ‘부분감축(관세)’는 관세의 일부만 감축하는 것을 의미, ‘부분감축(증가세)’는 관세의 종량세는 유지하고 증가세만 감축하는 것을

의미, ‘부분감축(EP 증가세)’는 EU의 진입가격(Entry Price)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종량세는 유지하고 증가세만 감축하는 것을 의미, ‘TRQ(증가세 감축)’은 TRQ의 고율관세의 종량세는 유지하되 증가세만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양허제외’, ‘양허제외+재검토’, ‘DDA 협상 타결 이후 재검토’ 등은 관세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관세양허지수 7에 분류하였다.

주의할 점은 관세양허지수와 품목별원산지기준 엄격성 지수는 동일한 속성을 비교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다만,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관세양허와 원산지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대상 FTA의 개방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FTA의 경제적인 효과를 관세양허 한 요소만 고려해왔던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진일보하여 비관세장벽인 원산지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개방의 폭을 비교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3.2.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유형 및 활용도

<표 6>에서는 36가지 유형별 품목별원산지기준의 활용도를 비교하였다. 연구대상 15개 FTA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 44.1%, 완전생산기준(WO)이 19.5%, 제한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TCR)이 10.4%,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 6.7%,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CTH+RVC)이 4.9%, 사용 재료의 함량을 제한한 완전생산기준(WO&MR)이 2.3%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 FTA에서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 62.2%, 제한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TCR)이 9.8%,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 8.3%, 완전생산기준(WO)은 7.4%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완전생산기준(WO)이 33.4%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은 23.5%, 제한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TCR)은 11.0%, 4단위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CTH+RVC)이 9.5%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여타 국가에 비해 보다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유형 및 활용도

대분류	세부 유형	KC	KS	KE	KA	KI	KU	KEU	소계 (한국)	비중 (한국)	UA	UC	JM	JT	CN	CC	EC	CE	소계 (기타)	비중 (기타)	총계 (전체)	비중 (전체)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FTA
원산지 기준	WO	-	-	373	330	371	-	304	1,378	33.4%	-	-	-	-	39	-	310	-	349	7.4%	1,727	19.5%	
	WO(PR)	-	-	6	-	-	-	-	6	0.1%	-	-	-	-	-	-	-	-	-	0.0%	6	0.1%	
	WO(AC)	-	-	-	8	-	-	-	8	0.2%	-	-	-	-	-	-	-	-	-	0.0%	8	0.1%	
	WO&MR	-	-	16	-	-	-	-	109	125	3.0%	-	-	-	-	-	-	77	-	77	1.6%	202	2.3%
2단위 세변경 기준	CC	303	228	11	2	-	423	-	967	23.5%	502	444	387	368	418	445	-	365	2,929	62.2%	3,896	44.1%	
	CC(AC)	-	-	-	-	-	-	-	-	0.0%	-	-	-	33	-	-	-	-	33	0.7%	33	0.4%	
	CC&MR	-	-	-	-	-	-	-	-	0.0%	3	3	7	-	-	-	-	1	14	0.3%	14	0.2%	
	CC&MR(AC)	-	-	-	2	-	-	-	-	2	0.0%	-	-	-	-	-	-	-	-	0.0%	2	0.0%	
	CC&TCR	92	188	30	28	-	116	-	454	11.0%	36	93	165	106	-	-	2	59	461	9.8%	915	10.4%	
4단위 세변경 기준	CTH	26	29	55	-	1	11	79	201	4.9%	27	23	21	42	120	46	53	57	389	8.3%	590	6.7%	
	CTH(AC)	-	-	-	-	-	-	-	-	0.0%	-	-	-	4	-	-	-	-	4	0.1%	4	0.0%	
	CTH&MR	-	-	-	1	-	1	18	20	0.5%	1	1	-	1	-	-	19	-	22	0.5%	42	0.5%	
	CTH&TCR	-	3	8	-	-	2	13	26	0.6%	2	5	6	5	-	-	11	9	38	0.8%	64	0.7%	
	CTH&TCR&MR	-	-	-	-	-	-	13	13	0.3%	-	-	-	-	-	-	13	-	13	0.3%	26	0.3%	
6단위 세변경 기준	CTSH	-	-	-	-	-	4	-	4	0.1%	4	7	-	23	9	-	-	39	82	1.7%	86	1.0%	
	CTSH&TCR	-	-	-	-	-	1	-	1	0.0%	1	-	-	-	-	-	-	-	1	0.0%	2	0.0%	
부가 가치 기준	RVC	3	9	3	16	-	-	12	43	1.0%	-	-	-	4	-	98	12	-	114	2.4%	157	1.8%	
	RVC&MR	-	-	-	3	-	-	-	3	0.1%	-	-	-	-	-	-	-	-	-	0.0%	3	0.0%	
특정 공정 기준	SP	-	-	-	-	-	19	-	19	0.5%	-	-	-	-	-	-	5	-	5	0.1%	24	0.3%	
결합 기준	CC+RVC	69	48	11	2	11	-	-	141	3.4%	-	-	-	-	-	-	-	-	-	0.0%	141	1.6%	
	CTH+RVC	96	84	76	2	104	-	29	391	9.5%	-	-	2	-	3	-	33	-	38	0.8%	429	4.9%	
	CTSH+RVC	-	-	-	-	102	-	-	102	2.5%	-	-	-	-	-	-	-	-	-	0.0%	102	1.2%	
선택 기준	CC or Split	-	-	-	-	-	1	-	1	0.0%	-	-	-	-	-	-	-	-	-	0.0%	1	0.0%	
	CC or SP	-	-	-	-	-	-	-	-	0.0%	9	9	-	-	-	-	-	-	18	0.4%	18	0.2%	
	CC or CTH&MR	-	-	-	-	-	-	-	-	0.0%	1	1	-	-	-	-	-	-	2	0.0%	2	0.0%	
	CC&MR or RVC&MR	-	-	-	3	-	-	-	3	0.1%	-	-	-	-	-	-	-	-	-	0.0%	3	0.0%	
	CTH or RVC	-	-	-	166	-	-	-	166	4.0%	-	-	-	-	-	-	-	-	-	0.0%	166	1.9%	
	CTH&MR or RVC	-	-	-	3	-	-	-	3	0.1%	-	-	-	-	-	-	-	-	-	0.0%	3	0.0%	
	CTH&MR or RVC&MR	-	-	-	11	-	-	-	11	0.3%	-	-	-	-	-	-	-	-	-	0.0%	11	0.1%	
	WO(AC) or RVC	-	-	-	6	-	-	-	6	0.1%	-	-	-	-	-	-	-	-	-	0.0%	6	0.1%	
	CTH&TRC or CTH	-	-	-	-	-	-	-	-	-	0.0%	-	-	-	-	-	-	-	1	1	0.0%	1	0.0%
	CTH&TRC or RVC	-	-	-	-	-	-	-	-	-	0.0%	-	-	-	1	-	-	-	-	1	0.0%	1	0.0%
기타	Split	-	-	-	6	-	8	8	22	0.5%	3	3	1	2	-	-	50	2	61	1.3%	83	0.9%	
	Wt	-	-	-	-	-	-	4	4	0.1%	-	-	-	-	-	-	4	-	4	0.1%	8	0.1%	
	CC or SP(Q)	-	-	-	-	-	3	-	3	0.1%	-	-	-	-	-	-	-	-	-	0.0%	3	0.0%	
	Review	-	-	-	-	-	-	-	-	-	0.0%	-	-	-	-	-	-	56	56	1.2%	56	0.6%	
총합계		589	589	589	589	589	589	589	4,123	100.0%	589	589	589	589	589	589	589	589	4,712	100.0%	8,835	100.0%	

한편, 활용되고 있는 품목별원산지기준의 다양성 측면²⁹에서 볼 때, 한·아세안 FTA가 16가지, EU·칠레 FTA 12가지, 한·미 FTA 11가지, 일·태국 FTA 11가지, 미·호주 FTA 11가지, 한·EFTA FTA 10가지, 한·EU FTA 10가지, 미·칠레 FTA 10가지의 유형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칠레 FTA는 3가지(CC, CTH, RVC), 중·뉴질랜드 FTA는 5가지(WO, CC, CTH, CTSH, CTH+RVC), 한·인도 FTA는 5가지, 한·칠레 FTA는 6가지, 한·싱가포르 FTA 7가지 유형을 사용하는 등, 여타 국가들에 비해 간단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와 같은 초기 FTA에 비해 한·미 FTA, 한·EU FTA 등에서 보다 다양한 품목별원산지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3.3. 품목별원산지기준 엄격성지수(Restrictiveness Index) 비교

본 연구의 대상인 15개 FTA의 농업 분야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을 비교해본 결과는 <표 7>와 같이 도출되었으며, 세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은 전체 평균 6.16으로 여타 국가들의 평균 5.9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만큼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 방지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연구 대상 FTA 전체를 두고 볼 때, 한·EFTA FTA의 엄격성 지수가 6.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EU·칠레 FTA가 6.39, 한·EU FTA가 6.3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원산지 규정이 여타 농산물 수입국에 비해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중·칠레 FTA는 엄격성 지수가 5.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캐나다·EFTA FTA가 5.65로 낮게 산출되었다. 이는 캐나다·EFTA FTA의 경우 제09류(커피, 차 등), 제18류(코코아와 그 조제품) 등과 같이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같은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체결한 FTA 품목별원산지 엄격성 지수 비교에서, 한·EFTA FTA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 지수가 6.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EU FTA 6.33, 한·싱가포르 FTA 6.32, 한·칠레 FTA 6.17, 한·미 FTA 6.10, 한·인도 FTA 5.95, 한·ASEAN FTA 5.96 순으로 엄격한 기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싱가포르 FTA의 엄격성 지수가 높은 것은 중계무역을 특징으로 하는 싱가포르의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감안한 것으로, 중국산 농산물이 싱가포르를 거쳐 우회수입되는

²⁹ 단, 부가가치 기준의 구체적인 수준 차이, 함양비율 및 변경제한 품목의 종류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것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한국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품목군(류, Chapter)별로는 한국이 체결한 FTA의 경우 제02류(육과 식용설육) 6.91,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 등) 6.91, 제04류(낙농품) 6.82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이 체결한 미·호주와 미·칠레 FTA의 경우, 제04류 6.87, 제15류 6.45, 제11류 6.16, 제19류 6.16, 제21류 6.13 순으로 높았다. 일본이 체결한 일·멕시코 및 일·태국 FTA의 경우는 제02류(육과 식용설육) 7.00, 제16류 7.00, 제20류 6.66, 제11류 6.57, 제17류 6.28 순으로, 중·뉴질랜드 및 중·칠레 FTA의 경우 제10류(곡물) 6.50, 제02류 6.00, 제16류 6.00, 제11류 6.00 순으로 높았다. 즉, 연구 대상 FTA의 국별 엄격성 지수가 높은 품목군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각 FTA 당사국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각 류와 FTA 협정별 엄격성 지수의 분산을 살펴보면, 제06류, 제16류, 제17류, 제23류, 제09류 순으로 협정별 엄격성 지수의 분산이 크게 나타났으며, 제01류(산동물),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 등), 제12류(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등), 제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 등의 경우 국가별 엄격성의 차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FTA 협정별 엄격성 지수의 차이를 보면, 제16류, 제17류, 제15류, 제23류의 분산이 가장 컸으며, 제01류, 제11류, 제02류, 제04류의 순으로 분산이 작게 나타났다.

한편, 각 FTA의 엄격성 지수를 기본 농산물(제01류~제14류)과 가공 농산물(제15류~제16류) 두 그룹³⁰으로 나눠 비교하면 <표 8>와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우선, 전체적으로 기본 농산물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이 6.38인 데 반해, 가공 농산물의 엄격성은 5.42로 기본농산물이 가공농산물에 비해 엄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기본 농산물 엄격성 지수는 6.69로 기타 FTA 평균 6.11보다 높고, 가공 농산물의 엄격성 지수는 5.25로 기타 FTA의 평균 5.57보다 낮다. 이러한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FTA로, 각각 2.49, 2.84의 지수 차이를 보여준다. 한·미 FTA의 경우 0.16으로 기본 농산물과 가공 농산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호주 FTA, 미·칠레 FTA, 일·멕시코 FTA, 일·태국 FTA 등도 그 차이가 미미하다. 기본 농산물의 엄격성 지수가 높다는 것은 개방으로 인한 수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자국의 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공 농산물의 엄격성 지수가 낮다는 것은 자국의 식품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국내 농업인을 보호하면서 식품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농업 현실을 감안할

³⁰ 동 분류는 협상 실무에서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분류법인 바, 보다 엄격한 가공도에 대한 분류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 지수 비교³¹

류	KC FTA	KS FTA	KE FTA	KA FTA	KI FTA	KU FTA	KEU FTA	평균 (한국)	본산 (한국)	UA FTA	UC FTA	JM FTA	JT FTA	CN FTA	CC FTA	EC FTA	CE FTA	평균 (기타)	본산 (기타)	평균 (전체)	본산 (전체)
01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0.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0.00	7.00	0.00
02	7.00	7.00	7.00	7.00	7.00	6.38	7.00	6.91	0.04	6.00	6.23	7.00	7.00	6.00	6.00	7.00	6.00	6.40	0.25	6.65	0.21
04	7.00	6.74	7.00	6.00	7.00	7.00	7.00	6.82	0.14	7.00	6.74	6.00	5.48	6.00	6.00	7.00	6.74	6.37	0.32	6.58	0.28
05	6.00	7.00	7.00	7.00	7.00	6.00	7.00	6.71	0.24	6.00	6.00	6.00	6.00	6.00	6.00	6.69	6.00	6.09	0.06	6.38	0.24
06	6.00	6.56	7.00	7.00	7.00	6.00	7.00	6.65	0.22	6.00	6.00	6.00	2.00	3.13	6.00	7.00	5.25	5.17	2.91	5.86	2.13
07	6.00	7.00	7.00	7.00	7.00	6.00	7.00	6.71	0.24	6.00	6.00	6.00	5.93	5.03	6.00	7.00	6.00	6.00	0.28	6.33	0.38
08	6.00	6.04	7.00	7.00	7.00	6.00	7.00	6.58	0.28	6.00	6.00	6.00	6.00	5.78	6.00	7.00	6.00	6.10	0.14	6.32	0.25
09	6.00	6.03	6.81	6.32	7.00	5.16	6.13	6.21	0.36	5.77	5.48	6.00	5.29	5.55	6.00	5.65	2.45	5.27	1.36	5.71	1.07
10	6.00	6.00	7.00	7.00	7.00	6.00	7.00	6.57	0.29	6.00	6.00	6.00	6.00	7.00	6.00	7.00	6.00	6.25	0.21	6.40	0.26
11	7.00	7.00	7.00	6.93	7.00	6.54	6.89	6.91	0.03	6.00	6.32	7.00	6.14	6.00	6.00	6.79	7.00	6.41	0.20	6.64	0.18
12	6.00	6.11	7.00	7.00	7.00	6.00	7.00	6.59	0.27	6.00	6.00	6.00	6.00	6.00	6.00	7.00	6.00	6.13	0.13	6.34	0.23
13	7.00	6.00	7.00	7.00	7.00	6.22	4.11	6.33	1.14	6.00	6.00	6.00	6.00	6.00	6.00	4.11	5.56	5.71	0.44	6.00	0.81
14	6.00	6.00	7.00	7.00	7.00	6.00	7.00	6.57	0.29	6.00	6.00	6.00	6.00	6.00	6.00	7.00	6.00	6.13	0.13	6.33	0.24
15	7.00	6.90	6.85	4.17	5.15	5.95	4.63	5.81	1.37	5.95	6.95	6.05	5.98	6.00	6.00	6.51	5.80	6.16	0.15	5.99	0.69
16	6.00	6.00	7.00	4.64	3.00	6.00	7.00	5.66	2.01	6.00	6.00	7.00	7.00	6.00	6.00	7.00	7.00	6.50	0.29	6.11	1.19
17	5.88	5.88	6.19	4.00	3.00	5.75	5.94	5.23	1.50	5.75	5.75	6.00	6.56	4.50	4.00	6.13	5.75	5.55	0.74	5.40	1.04
18	4.82	4.82	4.91	4.00	4.64	3.91	6.00	4.73	0.48	3.91	4.82	6.00	4.64	4.18	4.00	6.00	2.73	4.53	1.21	4.62	0.82
19	5.00	5.26	6.16	4.74	3.32	6.21	5.16	5.12	0.95	6.16	6.16	6.00	5.89	6.00	4.00	5.79	6.00	5.75	0.52	5.46	0.77
20	5.00	5.00	6.00	4.47	5.04	6.55	6.41	5.50	0.66	6.10	6.02	7.00	6.31	5.88	4.00	5.04	5.33	5.71	0.83	5.61	0.71
21	4.00	4.94	5.25	4.19	4.88	6.00	4.25	4.79	0.50	6.13	6.13	6.81	5.50	4.50	4.00	4.50	4.56	5.27	1.03	5.04	0.79
22	5.09	4.27	4.50	4.73	3.32	6.45	5.00	4.77	0.90	4.41	4.41	6.05	5.64	4.64	6.00	5.00	4.36	5.06	0.53	4.92	0.68
23	5.91	5.91	4.32	4.09	3.00	5.86	4.68	4.82	1.26	5.86	5.86	4.09	4.36	4.36	4.00	5.91	5.86	5.04	0.81	4.94	0.96
24	4.67	5.00	5.33	5.00	3.00	5.00	6.11	4.87	0.89	5.00	5.00	6.11	4.22	4.67	4.00	6.11	4.00	4.89	0.73	4.88	0.75
총평균	6.05	6.17	6.54	5.94	5.95	6.10	6.33	6.16	0.05	5.96	6.05	6.24	5.88	5.59	5.55	6.39	5.65	5.91	0.09	6.03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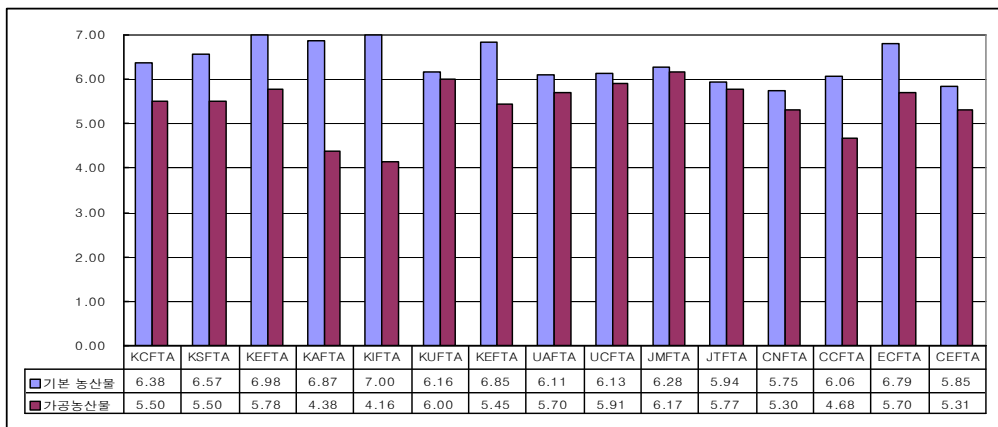
31 품목별원산지기준을 해석하고 엄격성 지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제한된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공정기준의 엄격성 지수를 어디에 위치시키는가에 따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때, 기본 농산물의 보호수준은 높이면서 수입 농산물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 수출을 더욱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가공 농산물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ASEAN FTA, 한·인도 FTA의 품목별원산지 협상 결과는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농산물 수출국에 속하는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가공농산물의 엄격성 지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가공식품을 생산함에 있어 자국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의 반영으로 보여 진다. 결론적으로, 기본농산물과 가공농산물의 엄격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품목, 협상 상대국, 당사국의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나, 국내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둔 일관적인 협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기본농산물과 가공농산물 원산지 엄격성 지수 비교

구분	KC FTA	KS FTA	KE FTA	KA FTA	KI FTA	KU FTA	KEU FTA	평균 (한국)	UA FTA	UC FTA	JM FTA	JT FTA	CN FTA	CC FTA	EC FTA	CE FTA	평균 (기타)	평균 (전체)
기본농산물 (A)	6.38	6.57	6.98	6.87	7.00	6.16	6.85	6.69	6.11	6.13	6.28	5.94	5.75	6.06	6.79	5.85	6.11	6.38
가공농산물 (B)	5.50	5.50	5.78	4.38	4.16	6.00	5.45	5.25	5.70	5.91	6.17	5.77	5.30	4.68	5.70	5.31	5.57	5.42
총평균	6.05	6.17	6.54	5.94	5.95	6.10	6.33	6.16	5.96	6.05	6.24	5.88	5.59	5.55	6.39	5.65	5.91	6.03
(A)-(B)	0.88	1.07	1.20	2.49	2.84	0.16	1.39	1.43	0.41	0.21	0.11	0.17	0.45	1.38	1.09	0.54	0.55	0.96

그림 1. 기본농산물과 가공농산물 원산지 엄격성 지수 비교



3.4. 엄격성 지수와 수출입 교역액 비중 비교³²

FTA의 일방 당사국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품목별원산지기준이란 높은 엄격성 지수 구간에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고, 낮은 지수 구간에서 상대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경우일 것이다. 즉, 수입이 많은 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적용하여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함으로써 상대국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수출이 많은 상품에 대해서는 완화된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설정하여 제3국으로부터 싼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이해균형 없이는 타결이 어려운 FTA 협상 속성상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는 원산지 엄격성의 분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수출입 교역액을 고려하여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향후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연구대상 15개 FTA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 지수별 수입액 비중을 분석하면 <표 9>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인도 FTA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엄격성이 높은 구간에서 상대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인도 FTA의 경우 엄격성 지수 3 구간이 전체 수입액의 75.1%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두박 한 개 세번이 66.0%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 지수가 높을수록 수입액 비중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엄격성 지수별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액 비중을 분석하면 <표 10>과 같다.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일·태국 FTA를 제외하고는 엄격성 지수가 높을수록 상대국에 대한 수출액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엄격성 지수가 높은 구간의 수입액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품목별원산지기준은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민감품목에 대해 최대한 방어함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균형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일·태국 FTA의

³² 교역액 기준연도는 각 FTA 협정 체결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HS 코드 개정으로 자료를 얻는 것이 용이치 않는 경우 그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한·칠레 FTA 2004~2006년 평균, 한·싱가포르 FTA 2004~2006년 평균, 한·EFTA FTA 2004~2006년 평균, 한·아세안 FTA 2002~2004년 평균, 한·인도 FTA 2004~2006년 평균, 한·미 FTA 2003~2005년 평균, 한·EU FTA 2004~2006년 평균, 미·호주 FTA 2002~2004년 평균, 미·칠레 FTA 2000~2001년 평균, 일·멕시코 FTA 2002~2004년 평균, 일·태국 FTA 2007~2008년 평균, 중·뉴질랜드 FTA 2007~2008년 평균, 중·칠레 FTA 2004~2006년 평균, EU·칠레 FTA 2002~2003년 평균)

경우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면서 수출이익까지 반영하는 등 한국과 일본에 유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9. 원산지 엄격성 지수와 농산물 수입액과의 관계

원산지 엄격성	KC FTA	KS FTA	KE FTA	KA FTA	KI FTA	KU FTA	KEU FTA	UA FTA	UC FTA	JM FTA	JT FTA	CN FTA	CC FTA	EC FTA
1	-	-	-	-	-	-	-	-	-	-	-	-	-	-
2	-	-	-	-	-	1.3%	-	0.0%	0.4%	-	2.1%	0.3%	-	-
3	-	-	-	-	75.1%	0.2%	-	0.0%	0.0%	-	-	-	-	-
4	0.0%	21.1%	21.4%	44.7%	0.0%	2.4%	34.2%	29.4%	13.1%	0.0%	21.4%	1.5%	2.4%	1.3%
5	12.5%	54.9%	3.2%	10.8%	2.9%	0.9%	21.3%	0.0%	0.0%	2.0%	0.2%			28.9%
6	25.8%	7.1%	29.7%	0.0%	-	81.4%	0.2%	67.9%	85.5%	43.0%	25.8%	97.1%	97.6%	0.4%
7	61.6%	16.8%	45.7%	44.5%	22.0%	13.7%	38.4%	2.6%	1.0%	55.0%	50.4%	1.2%	0.0%	69.3%
총평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관세청, World Trade Atlas.

표 10.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지수와 농산물 수출액과의 관계

원산지 엄격성	KC FTA	KS FTA	KE FTA	KA FTA	KI FTA	KU FTA	KEU FTA	UA FTA	UC FTA	JM FTA	JT FTA	CN FTA	CC FTA	EC FTA
1	-	-	-	-	-	-	-	-	-	-	-	-	-	-
2	-	-	-	-	-	0.3%	-	0.6%	1.4%	-	76.8%	0.1%	-	-
3	-	-	-	-	40.4%	0.2%	-	0.5%	0.0%	-	-	-	-	-
4	7.4%	14.9%	3.7%	43.9%	0.0%	10.5%	34.2%	23.5%	6.6%	4.5%	3.9%	15.4%	43.9%	6.8%
5	73.4%	55.2%	1.3%	19.2%	7.6%	14.5%	21.3%	0.5%	2.1%	0.0%	0.0%	-	-	29.6%
6	7.3%	19.3%	0.6%	0.9%	-	47.2%	6.2%	68.6%	81.9%	91.3%	18.8%	84.3%	56.1%	7.9%
7	11.8%	10.6%	94.3%	35.9%	52.0%	27.3%	38.4%	6.2%	8.0%	4.3%	0.4%	0.2%	0.0%	55.7%
총평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관세청, World Trade Atlas.

3.5. 원산지 규정과 관세양허 협상 결과를 동시 고려한 개방도 비교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산지 규정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 일정 기간 동안에만 보호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관세와는 달리 영구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FTA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관세만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 협정의 개방수준의 척도를 관세협상의 결과뿐만 아니라 품목별원산지기준까지 고려함으로써 기 체결 FTA와 주요국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의 개방도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해 보고자 한다.

우선, 품목별원산지기준 엄격성 지수와 관세양허 지수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FTA 협상에서 관세협상 결과는 각국의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관세철폐 기간이 길거나 양허제외,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특별한 양허방식을 부과한 품목의 경우 민감성이 높은 품목이라고 볼 수 있다. 품목별원산지기준이 이러한 민감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 지수와 관세양허 지수를 <표 11>과 같이 비교하였다. Estevadeordal(2000)은 NAFTA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과 관세양허 기간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³³ 일반적으로 품목별 원산지의 엄격성이 높을수록 관세양허의 엄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직관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FTA를 대상으로 비교해본 결과 이를 단정 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U FTA, 일·멕시코 FTA, 중·뉴질랜드 FTA 등에서는 엄격성 지수가 가장 높은 구간(엄격성 지수 7)에서 평균 관세양허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ASEAN FTA, 한·인도 FTA, 한·미 FTA, 미·호주 FTA 등에서는 품목별원산지 엄격성 지수가 가장 높은 구간에서 관세양허 지수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칠레 FTA, 일·태국 FTA, 중·칠레 FTA 등에서는 엄격성 지수가 가장 낮은 구간(엄격성 지수 2)에서 평균 관세양허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일관성 부재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관세양허 협상이 수입의 측면에서 산업보호 효과 극대화에 주력하는 반면, 품목별원산지기준의 경우 산업보호 효과 이외 수출이익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데서 하나의 이유를 찾아 볼 수 있고, 농산물 및 공산품의 전체적인 양허균형 노력을 반영하지 못한 채 농업분야만 비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³³ 김한성 등(2009) 재인용.

표 11.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 지수와 관세양허 지수와의 관계

원산지 엄격성 (양허국) ³⁴	KC FTA (한국)	KS FTA (한국)	KE FTA (한국)	KA FTA (한국)	KI FTA (한국)	KU FTA (한국)	KEU FTA (한국)	UA FTA (미국)	UC FTA (미국)	JM FTA (일본)	JT FTA (일본)	CN FTA (중국)	CC FTA (중국)	EC FTA (EU)
1	-	-	-	-	-	-	-	-	-	-	-	-	-	-
2	-	-	-	-	-	2.50	-	5.06	1.92	-	4.62	1.55	-	-
3	-	-	-	-	4.72	2.71	-	1.00	1.00	-	-	-	-	-
4	3.12	3.61	2.42	2.13	5.60	2.13	1.63	2.71	1.65	1.25	4.58	1.80	2.28	2.86
5	3.08	2.59	2.47	3.18	5.18	1.77	2.17	3.33	1.78	2.71	1.48	-	-	5.01
6	3.57	3.84	2.80	2.17	-	2.15	2.07	1.65	1.33	4.90	3.88	2.22	2.09	4.53
7	4.11	4.31	1.54	2.70	5.23	2.66	2.42	4.23	1.69	5.04	4.29	2.51	1.34	3.95
총평균	3.59	3.38	1.83	2.54	5.12	2.27	2.26	2.51	1.49	4.85	4.04	2.15	2.09	3.99

주) 표 안의 수치는 관세양허 지수의 평균임.

다음으로, 지금까지 FTA 협상의 개방수준을 관세협상의 결과로 평가했던 것과는 달리, 관세협상 결과뿐만 아니라 품목별원산지 협상의 결과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FTA의 개방수준을 관세양허 지수와 품목별원산지 엄격성 지수를 통해 이를 고찰하면, <표 12>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관세양허지수를 보면, 미·칠레 FTA가 1.49로 개방수준이 높았으며, 한·인도 FTA가 5.12로 개방수준이 낮았다. 중·뉴질랜드 FTA, 중·칠레 FTA도 개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와 한·EU FTA의 관세양허 지수는 각각 2.27, 2.26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주의할 점은 관세양허와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 지수는 동일한 속성이 아니므로 단순합이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각 FTA의 개방수준을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어느 한 지수가 유사할 경우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하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관세양허 지수가 유사하나, 품목별 원산지 엄격성 지수는 한·EU FTA가 더 높으므로 한·미 FTA에 비해 한·EU FTA의 보호수준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인도 FTA와 한·미 FTA의 경우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이 유사하나 한·미 FTA의 관세양허 지수가 낮음을 감안할 때, 한·인도 FTA가 한·미 FTA보다 보호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³⁴ FTA 원산지 규정은 당사국의 모든 양허안에 영향을 미치나, 여기서는 당사국중 한 국가의 양허안만 고려한다. 즉,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의 양허안만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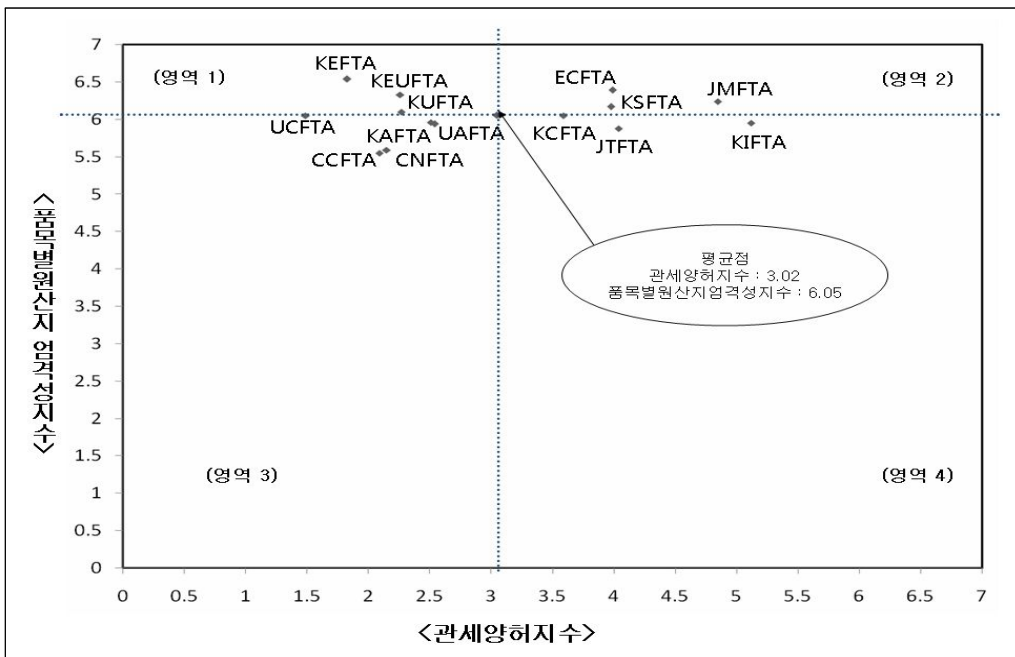
표 12. 관세양허 지수와 원산지 엄격성 지수 비교

류	KCFTA		KSFTA		KEFTA		KAFTA		KIFTA		KUFTA		KEUFTA		UAFTA		UCFTA		JMFTA		JTFTA		CNFTA		CCFTA		BCFTA	
	양허	PSR	양허	PSR	양허	PSR	양허	PSR	양허	PSR	양허	PSR	양허	PSR	양허	PSR	양허	PSR	양허	PSR	양허	PSR	양허	PSR	양허	PSR	양허	PSR
01	2.43	7.00	2.43	7.00	1.57	7.00	1.22	7.00	2.94	7.00	1.63	7.00	1.45	7.00	1.11	7.00	1.00	7.00	1.96	7.00	1.94	7.00	1.60	7.00	1.34	7.00	4.36	7.00
02	4.34	7.00	5.50	7.00	1.13	7.00	3.54	7.00	5.83	7.00	2.87	6.38	3.03	7.00	1.82	6.00	1.44	6.23	4.44	7.00	4.51	7.00	2.23	6.00	2.32	6.00	4.60	7.00
04	5.98	7.00	6.71	6.74	1.39	7.00	4.53	6.00	6.67	7.00	4.14	7.00	3.90	7.00	4.65	7.00	1.71	6.74	6.75	6.00	6.78	5.48	2.26	6.00	2.05	6.00	6.42	7.00
05	2.19	6.00	2.09	7.00	2.33	7.00	1.33	7.00	2.76	7.00	1.46	6.00	1.46	7.00	1.00	6.00	1.00	6.00	1.27	6.00	1.00	6.00	1.84	6.00	1.92	6.00	1.00	6.69
06	2.09	6.00	3.01	6.56	1.00	7.00	1.62	7.00	4.86	7.00	1.73	6.00	1.69	7.00	1.07	6.00	1.00	6.00	1.00	6.00	1.00	2.00	1.67	3.13	1.96	6.00	1.55	7.00
07	4.20	6.00	5.19	7.00	1.49	7.00	2.99	7.00	6.80	7.00	2.53	6.00	2.73	7.00	1.42	6.00	1.33	6.00	3.66	6.00	2.44	5.93	1.87	5.03	1.00	6.00	2.93	7.00
08	5.00	6.00	5.36	6.04	1.05	7.00	3.81	7.00	6.71	7.00	2.44	6.00	2.51	7.00	1.39	6.00	1.35	6.00	3.86	6.00	1.96	6.00	2.05	5.78	2.23	6.00	2.29	7.00
09	3.03	6.00	2.69	6.03	1.44	6.81	1.83	6.32	4.50	7.00	1.58	5.16	1.78	6.13	1.00	5.77	1.00	5.48	3.79	6.00	1.40	5.29	1.88	5.55	1.54	6.00	1.26	5.65
10	4.66	6.00	4.06	6.00	1.00	7.00	3.16	7.00	5.09	7.00	2.91	6.00	3.22	7.00	1.00	6.00	1.00	6.00	5.40	6.00	4.62	6.00	4.21	7.00	4.21	6.00	6.18	7.00
11	6.04	7.00	5.44	7.00	1.53	7.00	4.51	6.93	6.38	7.00	3.13	6.54	3.27	6.89	1.08	6.00	1.00	6.32	6.83	7.00	6.09	6.14	3.28	6.00	3.39	6.00	5.76	6.79
12	3.24	6.00	2.76	6.11	1.00	7.00	1.95	7.00	4.03	7.00	1.87	6.00	2.12	7.00	1.33	6.00	1.07	6.00	2.74	6.00	1.58	6.00	1.69	6.00	1.40	6.00	1.33	7.00
13	3.40	7.00	3.44	6.00	3.16	7.00	2.12	7.00	4.92	7.00	1.96	6.22	1.84	4.11	1.00	6.00	1.00	6.00	2.43	6.00	1.45	6.00	1.69	6.00	1.82	6.00	1.82	4.11
14	1.48	6.00	5.67	6.00	2.90	7.00	1.67	7.00	2.43	7.00	2.43	6.00	2.33	7.00	1.00	6.00	1.00	6.00	4.38	6.00	1.06	6.00	1.78	6.00	1.73	6.00	1.00	7.00
15	2.98	7.00	2.41	6.90	1.70	6.85	1.68	4.17	3.96	5.15	1.62	5.95	1.53	4.63	1.41	5.95	1.20	6.95	5.19	6.05	3.70	5.98	3.96	6.00	3.94	6.00	2.08	6.51
16	5.38	6.00	6.00	6.00	1.00	7.00	4.36	4.64	6.67	3.00	2.88	6.00	2.79	7.00	1.07	6.00	1.00	6.00	5.19	7.00	5.80	7.00	2.00	6.00	2.40	6.00	3.98	7.00
17	3.88	5.88	4.24	5.88	1.85	6.19	2.09	4.00	4.45	3.00	2.15	5.75	2.18	5.94	4.61	5.75	2.05	5.75	6.63	6.00	5.86	6.56	3.67	4.50	3.61	4.00	6.60	6.13
18	2.58	4.82	2.91	4.82	3.18	4.91	1.79	4.00	4.21	4.64	2.12	3.91	1.97	6.00	4.88	3.91	2.15	4.82	6.23	6.00	5.93	4.64	2.00	4.18	1.73	4.00	4.89	6.00
19	3.18	5.00	3.16	5.26	4.12	6.16	2.58	4.74	4.86	3.32	2.46	6.21	2.30	5.16	3.34	6.16	1.71	6.16	7.00	6.00	6.84	5.89	2.00	6.00	2.32	4.00	5.84	5.79
20	3.50	5.00	4.26	5.00	2.26	6.00	2.79	4.47	6.42	5.04	2.35	6.55	2.06	6.41	1.86	6.10	1.61	6.02	5.07	7.00	3.43	6.31	2.00	5.88	2.23	4.00	3.47	5.04
21	2.49	4.00	3.40	4.94	3.82	5.25	2.03	4.19	5.42	4.88	2.22	6.00	1.96	4.25	4.01	6.13	1.92	6.13	5.89	6.81	5.15	5.50	1.95	4.50	2.59	4.00	3.95	4.50
22	2.37	5.09	3.63	4.27	2.54	4.50	2.56	4.73	4.50	3.32	1.79	6.45	1.71	5.00	1.73	4.41	1.38	4.41	2.30	6.05	3.15	5.64	1.96	4.64	2.20	6.00	5.16	5.00
23	2.66	5.91	1.64	5.91	1.64	4.32	1.45	4.09	2.73	3.00	1.61	5.86	1.61	4.68	1.50	5.86	1.11	5.86	1.90	4.09	1.45	4.36	1.11	4.36	1.33	4.00	4.00	5.91
24	6.36	4.67	6.36	5.00	1.16	5.33	1.24	5.00	5.24	3.00	3.08	5.00	3.08	6.11	2.79	5.00	1.66	5.00	3.73	6.11	4.27	4.22	2.00	4.67	3.00	4.00	5.50	6.11
평균	3.59	6.05	3.98	6.17	1.83	6.54	2.54	5.94	5.12	5.95	2.27	6.10	2.26	6.33	2.51	5.96	1.49	6.05	4.85	6.24	4.04	5.88	2.15	5.59	2.09	5.55	3.99	6.39

주) ‘양허’는 관세양허지수, ‘PSR’은 품목별 원산지 엄격성지수를 의미한다.

한편, 품목별원산지기준과 관세양허 협상 결과 모두를 고려한 각 FTA의 개방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Y축은 품목별원산지 엄격성 지수를, X축은 관세양허 지수를 나타내며, 두축의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연구 대상 15개 FTA에서 두 지수의 평균이 되는 지점(관세양허지수 평균 : 3.02, 품목별원산지 엄격성지수 평균 : 6.05)을 점선으로 구분하여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영역 2에 위치한 FTA는 관세양허와 품목별원산지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역 1에 위치한 FTA의 경우 품목별원산지 엄격성은 높으나 관세양허의 개방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영역 3의 경우 관세양허와 품목별 원산지 모두에서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영역 4에 위치한 FTA의 경우 품목별원산지의 개방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관세양허의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FTA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 대상 15개의 FTA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한·싱가포르 FTA, 일·멕시코 FTA, EU·칠레 FTA 등이 가장 개방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칠레 FTA, 중·뉴질랜드 FTA, 한·ASEAN FTA의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품목별원산지기준 엄격성 지수와 관세양허 지수를 동시 고려시 FTA 분포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7개의 FTA와 함께 농업분야가 비중 있게 다뤄진 주요국의 FTA 8개를 대상으로 농업분야 FTA 원산지 규정의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농업분야 FTA 원산지 규정의 체계를 분석하였고 정량적 분석에서는 품목별원산지 엄격성 지수와 관세양허 지수의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대상 FTA의 농업분야 원산지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관세장벽인 원산지 규정을 계량화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³⁵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의 시도가 그동안의 관세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원산지 규정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논의를 촉발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산업 여건,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증대 정책, 국제곡물가격 상승, 기상변화, 중국의 급부상 등 우리를 둘러싼 많은 변화의 요인들을 감안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통상정책 및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정책 및 전략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향후 추진될 FTA에서는 우리의 민감품목 보호와 농산물 수출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원산지 기준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 한국이 체결한 FTA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은 형태의 다양성 측면에서 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저조하였으며,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을 만드는 데 수동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미·호주 FTA, 한·미 FTA 등의 세부 품목분리를 통한 산업정책 반영, 캐나다·EFTA FTA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에 대한 재검토 규정, 한·미 FTA의 제조담배에 대한 TRQ 방식 도입 등의 다양한 방식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다양화될 경우 동일품목에 대해서도 FTA 상대국별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스파게티볼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둘째,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엄격성과 관련해, 앞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전체적인 엄격성은 대체로 양국의 산업적 민감성을 균형되게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는 이러한 균형의 시각에서 우리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품목별/산업별 선택과 집중 방안이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³⁵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원산지기준의 엄격성 지수를 사용하고 관세와의 연계를 위해 관세양허지수를 사용하는 등 지수의 사용을 통해 연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하지 못한 점으로 생각되는 바, 비관세장벽의 계량화 연구가 추후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나치게 완화된 FTA 원산지 규정은 우회수입 증가로 산업보호 약화의 우려가 있는 반면에 너무 지나치게 강화된 FTA 원산지 규정은 교역 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은 FTA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의 민감성 보호에 주력하였다. 관세양허 협상의 경우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주된 최고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원산지 규정 협상의 경우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보호만이 최선이 아님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바람직한 FTA 원산지 규정이란 이러한 상반된 효과를 적절히 누리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엄격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품목별/산업별 전략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 등에서는 고추장, 된장, 인삼 등의 가공식품³⁶에 대해서는 여타 신선 농산물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향후 다자간 FTA, 누적 등의 효과를 감안한 식품산업에 대한 원산지 기준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한·중 FTA 체결, 북한지역과의 교역 확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여타 FTA를 추진함에 있어 유사누적의 도입 등과 같이 원산지 규정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한·ASEAN FTA, 일·태국 FTA에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ASEAN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품목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정부 로드맵과 같이 FTA가 계속 증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스파게티 볼 효과를 경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품목분류와 원산지기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농업분야 원산지 기준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FTA의 증가로 원산지 규정은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농산물 수입의 측면에서는 품목별/상대국별 다르게 규정된 원산지 규정의 정확한 집행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며, 수출의 측면에서는 상대국의 원산지 기준의 비관세장벽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6 주요 가공식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품목	호/소호	구분	KC FTA	KS FTA	KE FTA	KA FTA	KI FTA	KU FTA	KEU FTA
고추장/된장	200390		CTH+RVC	CTH+RVC	CTH+RVC	CTH+RVC	CC+RVC	CC&TCR	WO&MR
김치	200599		CTH+RVC	CTH+RVC	CTH+RVC	품목분리	CC+RVC	CC&TCR	WO&MR
인삼	121120	수삼, 백삼, 홍삼	CC	CC&TCR	WO	WO	WO	CC	WO
	130219	인삼정, 액즙	CC&TCR	CC	CC+RVC	WO	WO	CC&TCR	CTH&TCR
	210690	인삼조제품	CTH	CTH+RVC	CC+RVC	RVC&TCR	CTSH+RVC	품목분리	CTH&MR
	220290	인삼음료	CTH+RVC	CTH+RVC	CTH+RVC	RVC&TCR	CTH+RVC	품목분리	CTH&MR

참고 문헌

- 고준성. 2003.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한국의 FTA 상품무역규정협상 가이드라인의 모색」. 산업연구원.
- 관세청. 2008.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품목별원산지기준(Product Specific Rule) - 칠레·싱가포르·EFTA·ASEAN」.
- 관세청, 2007. 「2007년 관세율표 실무해설 편람」.
- 김한성 등. 2009. 「한국의 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방호경. 2004.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송승이. 2005. 「원산지 규정의 이해와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무역연구소.
- 이장규 등. 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용화 등. 2000. 「관세율표상품학」. 박영사.
- 정인교 등. 2005. 「우리나라 FTA 원산지 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 정혜련, 임정빈. 2010. 「한국 및 주요국 FTA 농업분야 원산지 규정 연구」. 2010년도 한국농업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강원 속초).
- 조미진 등. 2008.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지현 등. 2007.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1994. 「NAFTA 원산지 규정해설」.
- 한홍렬. 1994. 「NAFTA 원산지 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홍영선 등. 2001. 「관세율표·상품학」. 박영사.
- Anson, J., O. Cadot, A. Estevadeordal, J.de Melo, A. Suwa-Eisenmann, and B. Tumurchudur. 2005. "Rules of Origin in North-South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with an Application to NAFTA."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3, pp. 501-517.
- Bhagwati, Jagdish. 1992. "Regionalism versus Multilateralism." *The World Economy*. vol. 15, no. 5, pp. 535-555.
- Cadot, Oliver, Jaime de Melo, Antoni Estevadeordal, Akiko Suwa-Eisenmann and Bolormaa Tumurchudur. 2002. "Assessing the Effect of NAFTA's Rules of Origin," Mimeo.
- Estevadeordal, Antoni. 2000.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vol. 34.
- Estevadeordal, Antoni & Kati Suominen. 2002. "Rules of Origin and the Pattern of Trade between U.S. and Canada." Washington, DC: Integration, Trade and Hemispheric Issues Division, 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 _____. 2003. "Measuring Rules of Origin in the World Trading System and Proposals for Multilateral Harmonization." Integration, Trade and Hemispheric Issues Division, and Regional Programs Department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_____. 2004. "Rules of Origin in FTAs in Europe and in the Americas: Issues and Implications

- for the EU-Mercosur 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 INTAL-ITD (<http://www.iadb.org/intal>).
- Estevadeordal, A., J.E. Lopex-Cordova. and K. Suominen. 2006. “How do Rules of Origin Affect Investment Flows: Some Hypotheses and the case of Mexico.” INTAL-ITD Working Paper 15.
- Falvey, R. and G. Reed. 1998. “Economic Effects of Rules of Origin.”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 134, pp. 209-229.
- Krishina, Kala and Anne Krueger. 1995. “Implementing Free Trade Areas: Rules of Origin and Hidden Protection.” In A Deardorff, J. Levinsohn and R. Stern (eds.), *New Directions in Trade Theor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rueger, A. O. 1999. “Free Trade Agreements as Protectionist Devices: Rules of Origin.” *Trade Theory and Econometrics*.
- Olivier Cadot, Antoni Estevadeordal, Akiko Suwa-Eisenmann and Thierry Verdier. 2006. “The Origin of Goods :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
- Productivity Commission. 2004. “Rules of Origin under the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 Restrictiveness Index for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Canberra.
- WTO. 2002.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REG/W/45.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

원고 접수일: 2013년 10월 31일
원고 심사일: 2013년 11월 12일
심사 완료일: 2014년 03월 19일